

2001. 2. 19

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2001.2.8	2. 8	2. 14	2. 14	기획 감사과장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 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사회 진흥과장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	"	"	"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문화회관 관리소장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	"	"	박물관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제3조 결정사항중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등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5호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 제16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농지개혁법 폐지)
- 제17호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농지확대개발
촉진법 폐지)
- 제18호 초지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초지법 개정)
- 제20호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가정의례
에관한법률 폐지)
- 제21호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조수보호및수립에
관한법률 개정)
- 제22호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외국민간원조단체
에관한법률 개정)
- 제23호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훈령 폐지)
- 제24호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에서 처리할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재산, 보존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 제26호 유통근대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유통산업근대
화촉진법 폐지)
- 제28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생활보호법 폐지)
- 제33호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조정, 처리할 사항 삭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제3조중 2호, 12호, 14호, 27호, 31호, 32호, 35호는 경미한 사항
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2) 주요골자

-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사용허가 및 취소 등 제한 조항의 자의적 해석우려 등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

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의 권리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2) 주요골자

-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행위의 허가 및 제한 조항의 자의적 해석우려 등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

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의 권리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2) 주요골자

-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 위탁계약의 취소와 사용허가의 제한조항과 자의적 해석우려 등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체화하기 위함

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2) 주요골자

-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증
- 지급정지 및 회수의 「품행불량」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으로 객관성 있게 구체화하기 위함.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또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특별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용료징수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용료의 납부방법 개선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시 일반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징수 (안 제8조제4항)
- 리허설 사용료(당해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징수(별표)

○ 유료공연에 대한 특별사용료(총판매수익의 20% 납부) 폐지

○ 사용료 감면 조항중 일부감면과 전부감면 기준 제시(안제10조)

- 전부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등에 관한 행사
- 일부감면 :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주지부, 사단법인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회충주지부, 사단법인충주문화원에서 직접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활동(무료 입장에 한함)에 대하여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시설사용료의 세분화

사.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들의 박물관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박물관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관람자격 : 금지사항 완화
- 관람행위 : 제한행위 개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 그 결정사항을 현행 39개 사항 중 관련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29개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 이중에 현행 5호의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개정한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발췌 설명드리면
 - 지방재정법 제78조에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관리”란 용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인용하여 적용한 것은 관계법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란 공유재산의 “대부(임대)”를 말하는 것임.
-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읍·면동사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객관성 결여 및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객관성 결여 및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11조에 위탁계약의 취소중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내용이 막연하고 불분명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계약취소하기 6월전으로 명백히 명시하였으며
- 제13조제1호 및 제4호의 추상적인 명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는데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

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7조 내용 중 “품행불량”은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성 있게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일반 및 부대시설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용자의 불만을 살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 문화회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사.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관람객들이 박물관 관람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박물관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농지법등 법률이 개정된 시기는?

○답변 : 법이 개정된 시기는 각기 다름.

▶ 질의 : 대부분 '98~'99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 하는 이유는?

○답변 : 전체 조례를 점검했어야 했는데 지난해 해당과로부터 받아 지금에서 개정하게 됐음. 향후 곧바로 개정토록 하겠음.

▶ 질의 : '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대한 조례가 3~4년 지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답변 : 본 조례는 개정이 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며 시민에게 불편은 없으며 향후 즉시 개정토록 하겠음.

니.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행정규제개혁 지시의 시기는?

○답변 : 법무부서에서 일괄지시된 사항임. 시기가 늦었음.

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없음”

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11조3항에 “6개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제제 조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 : 조례에 조항을 넣을수 없어 수탁자에게 이행 각서를 받았음.
(쌍방합의에 의해 월 1,000만원을 시에 납부하는 것임.)

▶ 질의 : 주성전문대에서 운영 시기는?

○답변 : 2월 1일부터 8명이 운영하고 있음.

▶ 질의 : 조례에 송시된 계약기간은?

○답변 : 3년임.

▶ 질의 : 6개월전이라면 행정 편의주의적 기간이라고 보는데?

○답변 : 예를들어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으며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으로 6월전으로 명문화 한 사항임.

▶ 질의 :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리적으로 생각됨.

○답변 : 유아스포츠 뿐아니라 컴퓨터 교육등 전반적인 사항이고 6월 이란 지난 특위에서 나온 숫자이며 관리운영 지침은 연구, 검토해 보겠음.

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없음”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제11조 전부 감면을 한다면 학술발표등 연습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도 무료대관 할 수 있는지?

○답변 :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경우 전부 감면할 경우 대관료 징수금액이 크게 줄것으로 봄.

▶ 질의 : 조례 전체가 20조로 되어 있으며 변경은 2/3가 개정되면 전문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답변 : 사용료 개정에 몇조 뿐임. 각 조가 변경된 사항임.

▶ 질의 : 문화회관은 수익관계를 떠나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작년 손익 관계는?

○답변 : 작년은 약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으며 지출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등 4억 정도됨.

사.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제4조6항의 삭제는 상위법에 위한 것은 아닌지 또한 취객이나 정신박약아도 관람할 수 있는지?

○답변 : 제4조 1~5항까지 세분화되어 있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의결(별지)
- 나.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마.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바.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사.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별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중 제3조 제5호를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결정사항) <생략> 1~4. <생략> 5. <u>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상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6~29. <생략>	제3조(결정사항)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6~29. <현행과 같음>